

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

(상호, 대표자 및 주된 영업소 소재지 변경 등)

(앞쪽)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10일
신고인	상 호	국가유산수리업등의 종류 및 등록번호		
	대표자	전화번호		
	영업소 소재지			

변 경 내 용

변경 구분	변경일	변경 전 사항	변경 후 사항

「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귀하

신고인(대표자) 제출서류	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. 다만, 시·도지사가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통해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. 1.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: 다음 각 목의 서류 가.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(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나. 대표자의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(국가유산수리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만 해당하며, 제출일 전 1년 이내에 작성된 것을 말합니다) 2.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이 변경된 경우: 다음 각 목의 서류 가. 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. 「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8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다. 삭제 <2026. 5. 12.> 3. 임대차계약서 사본(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「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: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또는 사업자등록증명(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: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3.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: 다음 각 목의 서류 가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또는 사업자등록증명(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나. 「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) 자기 소유인 경우: 건물 등기부등본 2)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: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3) 임대차인 경우: 건물 등기부등본	없음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 및 제3호가목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.

신고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처 리 절 차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